

대구광역시달서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5-33
----------	-------

제출년월일 : 95. 7.

제 출 자 : 달서구청장
(시민과)

제안이유

- 1) 호적법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하여 시행코자 함.

2. 근거법령

- 호적법시행규칙 제52조제6항

3. 주요골자

- 과태료 부과기준중 신고의무자의 학력, 생활정도, 해태이유, 해태지역등을 삭제 (안 제4조제1항)
- 과태료 부과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신고(신청) 지연사유서의 첨부 를 생략할 수 있음(안 제5조제1항)

4. 개정조례(안) : 따로붙임

5.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붙임

대구광역시달서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구청장은 별표2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하여 과태료의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제5조중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구청장은 신고를 지연한 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신고(신청) 지연사유서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중 “해태이유서 제출과 동시에”를 삭제한다.

[별표2] 및 [별지 제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

해 태 기 간	과 태 료	
	제130조 위반	제131조 위반
1 월 미 만	10,000원	20,000원
1 월 이 상 3 월 미 만	20,000원	40,000원
3 월 이 상 6 월 미 만	30,000원	60,000원
6 월 이 상	50,000원	100,000원

[별지 제1호서식]

신고(신청)지연사유서

신고(신청)의무자	성명		생년월일	
	본적			
	주소			
사건본인의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신고(신청)의무자와의관계			
사건발생상황	신고(신청)내용			
	신고(신청)사유발생일자			
	신고(신청)일자			
	지연기간	1월미만, 1월이상~3월미만 3월이상~6월미만, 6월이상		
신고(신청)지연사유	(육하원칙에 의거 작성)			

년 월 일

제출인 (인)

구청장(동장) 귀하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4조(부과기준및면제) ① 구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해태기간, 신고 의무자의 학력, 생활정도, 해태지역등을 참작하여야 하며,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2와 같다.</p>	<p>제4조(부과기준및면제) ① 구청장은 별표2의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의하여 과태료의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p>
<p>제5조(부과등) ① 구청장은 신고를 해태한 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해태이유서를 신고서에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해태이유서의 제출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서를 기록하고 직권으로 작성한다.</p>	<p>제5조(부과등) ① 구청장은 신고를 지연한 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신청)지연 사유서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p>
<p>제6조(사전징수) 구청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 의무자가 해태이유서 제출과 동시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는 경우와 신고자의 거주지가 접수기관의 관할구역이 아닐 경우에는 과태료를 사전징수할 수 있다.</p>	<p>제6조(사전징수)(삭제).....</p>

대구광역시달서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전문개정 1991·4·13 조례 제196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호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2조의 2 및 호적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호적신고 또는 신청의 해태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납부의무자) 과태료납부의무자는 신고 또는 신청(이하 "신고"라 한다) 의무자 또는 신고자로 한다.

제3조(부과대상) 과태료부과 대상은 별표1과 같다.

제4조(부과기준 및 면제) ① 구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해태기간, 신고 의무자의 학력, 생활정도, 해태이유, 해태지역 등을 참작하여야 하며, 과태료부과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생활보호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
2. 이민, 유학, 취업 등에 의한 외국거주 및 천재지변 등으로 법정기간내 신고를 하지 못한 자
3. 기타 구청장이 과태료를 면제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자

제5조(부과등) ① 구청장은 신고를 해태한 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해태이유서를 신고서에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해태이유서의 제출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고 직권으로 작성한다.

② 구청장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납기개시 5일 이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납부통지서와 규칙 제39호서식의 과태료납부통지를 납부의무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 ③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15일이내로 한다.
- ④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제반처리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결정자료부와 규칙 제51호 서식의 과태료징수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⑤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야 하며 이를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부과취소(변경)통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제6조(사전징수) 구청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의무자가 해태이유서제출과 동시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는 경우와 신고자의 거주지가 접수기관의 관할구역이 아닐 경우에는 과태료를 사전징수할 수 있다.

제7조(납부독촉) 구청장은 과태료납부의무자가 법 제132조의2제2항 및 규칙 제5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이내(은행납입인 경우에는 20일이내)에 10일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독촉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8조(체납처분) 구청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납부의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132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하여야 한다.

제9(준용규정) 과태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의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과태료 부과대상(제3조 관련)

부 과 대 상	근거 법령	과 태 료 금 액	
		법제130조해당	법제131조해당
1. 출생일로부터 1월이내 출생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출생신고)	법 제49조 법 제51조	5만원	10만원
2. 기아를 찾은 날부터 1월이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호적 정정신청)	법 제58조	5 "	10 "
3.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월이내에 인지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재판에 의한 인지신고)	법 제63조	5 "	10 "
4. 유언집행자 취임일로부터 1월이내에 인지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유언에 의한 인지신고)	법 제64조	5 "	10 "
5. 사산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이내에 사산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인지태아의 사산신고)	법 제65조	5 "	10 "
6.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월이내에 입양취소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입양취소신고)	법 제71조	5 "	10 "
7.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월이내에 피양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재판에 의한 피양신고)	법 제75조	5 "	10 "
8.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월이내에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재판에 의한 혼인신고)	법 제76조의2	5 "	10 "
9.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월이내에 혼인 취소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혼인취소신고)	법 제78조	5 "	10 "
10.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월이내에 이혼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재판에 의한 이혼신고)	법 제81조	5 "	10 "

부 과 대 상	근거 법령	과 태 료 금 액	
		법제130조해당	법제131조해당
11. 부모가 미성년의 자에 대한 친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거나 변경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친권자지정,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자(부모의 친권자 변동신고)	법 제28조 제1항	5만원	10만원
12.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친권이 나 관리권의 상실, 사퇴, 회복, 지정, 변경신고를 아니한 자(친권 또는 관리권의 상실, 사퇴, 회복, 지정, 변경에 따른 친권자 변동신고)	법 제28조 제2항	5 "	10 "
13. 후견인 취임일로부터 1월 이내에 후견개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후견개시 신고)	법 제83조	5 "	10 "
14. 후임자 취임일로부터 1월 이내에 후견인 경질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후견인 경질신고)	법 제84조	5 "	10 "
15. 후견종료일로부터 1월 이내에 후견종료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후견종료신고)	법 제86조	5 "	10 "
16. 사망의 사실을 안 날(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사망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사망신고)	법 제87조	5 "	10 "
17. 사망자를 인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망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본적불명자 인식불능자의 사망)	법 제93조	5 "	10 "
18. 재판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실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실종선고신고)	법 제95조	5 "	10 "
19. 호주승계의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호주승계신고)	법 제96조	5 "	10 "
20. 호주승계인이 외국에 있는 경우 승계의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신고서를 발송하지 아니한 자(승계인이 외국에 있는 경우 호주승계신고)	법 제96조 제3항	5 "	10 "

부 과 대 상	근거 법령	과 태 료 금 액	
		법제130조해당	법제131조해당
21. 재판의 확정일부터 1월이내에 호주승계 회복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호주승계회복신고)	법 제100조	5만원	10만원
22. 폐가 또는 무후가가 된 사실을 안 날부터 1월이내에 일가창립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일가창립의 신고)	법 제106조	5 "	10 "
23. 국적법 제11조에 의한 고시일부터 1월이내에 귀화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귀화신고)	법 제109조	5 "	10 "
24. 국적상실의 사실을 안 날부터 1월이내에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국적상실신고)	법 제110조	5 "	10 "
25. 법무부장관의 허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월이내에 국적회복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국적회복신고)	법 제112조	5 "	10 "
26.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1월이내에 개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개명신고)	법 제113조	5 "	10 "
27.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1월이내에 취적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취적신고)	법 제116조	5 "	10 "
28. 재판이 확정된 날부터 1월이내에 취적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판결에 의한 취적신고)	법 제119조	5 "	10 "
29. 호적정정허가 재판이 있었을 때 1월이내에 호적정정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허가의 호적정정신청)	법 제122조	5 "	10 "
30. 재판이 확정된 날부터 1월이내에 호적정정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판결에 의한 호적의 정정신청)	법 제123조	5 "	10 "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제4조제1항 관련)

부 과 기 준		부 과 율	부 과 금 액	
구 분	세 부 기 준		법제130조해당	법제131조해당
계		100분의 100	50,000원	100,000원
해 태 기 간	비 중	100분의 40	20,000원	40,000원
	· 1월미만	100분의 5	2,500원	5,000원
	· 1월이상 3월미만	100분의 10	5,000원	10,000원
	· 3월이상 6월미만	100분의 20	10,000원	20,000원
	· 6월이상 12월미만	100분의 40	20,000원	40,000원
해 태 지 역	비 중	100분의 20	10,000원	20,000원
	· 군	100분의 5	2,500원	5,000원
	· 시	100분의 10	5,000원	10,000원
	· 구(특별시, 직할시)	100분의 20	10,000원	20,000원
해 태 사 유	비 중	100분의 10	5,000원	10,000원
	· 무 지	100분의 5	2,500원	5,000원
	· 과 실	100분의 10	5,000원	10,000원
신고의무자 의 학 력	비 중	100분의 20	10,000원	20,000원
	· 국졸이하	100분의 5	2,500원	5,000원
	· 중·고졸	100분의 10	5,000원	10,000원
	· 전문대졸 이상	100분의 20	10,000원	20,000원
신고의무자 의 생활 정도	비 중	100분의 10	5,000원	10,000원
	· 비과세대상	100분의 5	2,500원	5,000원
	· 과세대상	100분의 10	5,000원	10,000원

해태기간이 12월이상인 경우 법 제130조 해당시는 50,000원, 법 제131조 해당시는 100,000원

[별지 제1호 서식]

해 태 이 유 서

1. 신고 (또는 신청)의무자

성명 (남, 여) 주민등록번호

본적

주소

학력(국졸이하, 중·고졸, 초대졸이상)

2. 사건본인의 인적사항

성명 : (남, 여) 주민등록번호 :

신고(또는 신청)의무자와의 관계

3. 사건발생상황

사건의 표시 :

사건발생년월일 : 년 월 일

사건신고년월일 : 년 월 일

해태기간(3개월미만, 3개월이상~6개월미만, 6개월이상~1년미만)

4. 해태이유(무지·과실)

5. 신고의무자 생활정도 : (과세대상·비과세대상)

 년 월 일

진술인

④

시장(구청장, 읍·면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납부 통 지 서

제 호	년도 일반회계
납부자	
주 소	
성 명	
세입과목	(관) (항) 임시적세의수입 잠수입 (목) 과태료 (호적과태료)
해태사항	
금 액	
납부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시내각은행본점·지점·예금취급소·동협·수협 00번창구, 전국우체국 (한은·산은제외)
위의 금액을 호적법 제132조의2에 의거 부과되었으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수입일부인
00시장(구청장, 읍·면장)	

80×160㎜ (신문용지 54g/㎡)

영수필통지서(1)

제 호	년도 일반회계
납부자	
주 소	
성 명	
세입과목	(관) (항) 임시적세의수입 잠수입 (목) 과태료 (호적과태료)
해태사항	
금 액	
납부기한	년 월 일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수입일부인
00은행 00지점	
00시(구읍·면) 징수관 귀하	

80×160㎜ (신문용지 54g/㎡)

영수필통지서(2)

제 호	년도 일반회계
납부자	
주 소	
성 명	
세입과목	(관) (항) 임시적세의수입 잠수입 (목) 과태료 (호적과태료)
해태사항	
금 액	
납부기한	년 월 일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수입일부인
00은행 00지점	
00시(군·구) 금고 귀하	

80×160㎜ (신문용지 54g/㎡)

영 수 증

제 호	년도 일반회계
납부자	
주 소	
성 명	
세입과목	(관) (항) 임시적세의수입 잠수입 (목) 과태료 (호적과태료)
해태사항	
금 액	
납부기한	년 월 일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수입일부인
00은행 00지점	

80×160㎜ (신문용지 54g/㎡)

[별지 제3호서식]

과 태 료 결 정 자 료 부

신고 또는 신청의무자		① 위 반 조 항	② 과 태 료 액	과 태 료 부 과 비 율							비 고
				해 태 기 간 1 년 미 만						해 태 기 간 1 년 이 상	
주소	성 명			③ 비 율 계	④ 해 태 기 간	⑤ 해 태 지 역	⑥ 신고 의 무 자 학 령	⑦ 해 태 이 유	⑧ 신고 의 무 자 생 활 정 도		

268mm × 190mm

인쇄용지(2급) 60g/㎡

*** 작성요령**

- ㉠ 위반조항은 호적법 제130조 또는 제131조와 별표1의 근거법령안 해당법령안 해당조문을 기입
- ㉡ 과태료액은 조례 제7조에 의한 산정금액 기입
- ㉢ 비율계는 ④~⑧의 합계
- ㉣ 해태기간은 1개월미만, 1개월이상, 3개월미만, 3개월이상, 6개월미만, 6개월이상, 1년미만으로 구분
- ㉤ 해태지역은 군, 시, 직할시로 구분(신고의무자의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함)
- ㉥ 신고의무자의 학력은 국졸이하, 중·고졸, 전문대졸이상으로 구분
- ㉦ 해태사유는 무지·과실로 구분
- ㉧ 신고의무자의 생활정도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비과세대상, 과세대상으로 구분

[별지 제4호서식]

과태료부과취소(변경) 통지서

주소 :

성명 :

귀하

고 지 금 액	취소(변경)액	차 액	비 고

취소(변경)사유 :

년 월 일
○○시장(구청장, 읍·면장)

190mm × 268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5호서식]

특 출 통 지 서

제 호	년도 일반회계
주소	
성명	
세입과목	(관) (항) 임시적세의수입 잠수입 (목) 과태료 (호적과태료)
해태사항	
금 액	
납부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시내각은행본점·지점· 예금취급소, 동협·수협 000번창구, 전국우체국 (한은·산은 제외)
위의 금액이 채납되었 으니 위와 같이 납부하지 기 바랍니다. 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채납차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합니다.	수입일부인
00시(구청장, 읍·면장)	
	80×160㎜ (신문용지 54g/㎡)

영수필통지서(1)

제 호	년도 일반회계
주소	
성명	
세입과목	(관) (항) 임시적세의수입 잠수입 (목) 과태료 (호적과태료)
해태사항	
금 액	
납부기한	년 월 일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 음을 통지합니다.	수입일부인
00은행 00지점 00시(구읍·면) 징수관 귀하	
	80×160㎜ (신문용지 54g/㎡)

영수필통지서(2)

제 호	년도 일반회계
주소	
성명	
세입과목	(관) (항) 임시적세의수입 잠수입 (목) 과태료 (호적과태료)
해태사항	
금 액	
납부기한	년 월 일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 음을 통지합니다.	수입일부인
00은행 00지점 00시(군·구) 금고귀하	
	80×160㎜ (신문용지 54g/㎡)

영 수 증

제 호	년도 일반회계
주소	
성명	
세입과목	(관) (항) 임시적세의수입 잠수입 (목) 과태료 (호적과태료)
해태사항	
금 액	
납부기한	년 월 일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수입일부인
00은행 00지점 귀하	
	80×160㎜ (신문용지 54g/㎡)